

KK054 행위 청구

1AA-2111-0429429 , 신청일 2021-11-13 19:24:53, \신청인 김기범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수액로를 통한 주사, 정맥내 일시주사에 대한 자율점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변에서 많은 질문을 모아 의뢰드립니다.

1. 수액제청구가 없는 명세서에서 KK054 청구:

환자에게 급여수액제없이 (비급여 아미노산수액제)를 투여할때가 있습니다. 이때 비급여수액제의 수액로를 통한 주사행위(KK054)로 청구할때는 '수액제 청구가 없는 주사수기이므로 청구요류로 심사 조정'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정맥내 일시주사(KK020) 으로 청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kk054로 청구해야 할까요?

2. 수액제청구가 있는 명세서에서 KK020의 청구여부:

급여수액제(포도당수액제 등)를 투여하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먼저 정맥내 일시주사(KK020)를 시행하고 나서,

이때 수액제가 청구명세서에 있는데도 KK020 청구하면 오류가 생기지 않는지요?

3. 진료 상황에 따라 수액환자 KK020과 KK054의 동시청구가 가능한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수액제를 투여시작하면서 정맥내일시주사를 시행하고, 수액제 투여중간에 수액로를 통한 주사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명세서에 수액제와 KK020 Kk054 가 동시 청구가능할까요?

-----<답변>-----

처리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심사평가부

담당자 오지혜 (063-254-7968), 접수일 2021-11-15 10:05:02,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111-0458432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111-0429429)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KK020(정맥내 일시주사)와 KK054(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가. 첫째, 전액본인부담약제 처방 후 급여약제 iv side 주사 시 수기로 산정 방법에 대한 답변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등) 제1항> 등에 의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는 요양기관에 내원한 수진자에 대하여 실제 진료한 내역을 기록한 진료기록부 등에 의하여 정확히 청구하여야 합니다.

○ 이에 따라, 전액본인부담수액제 처방 후 급여 약제 iv side 주사시 수기로는 KK054(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로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진료비 청구시 U항(전액본인부담)에 수액제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줄단위 특정내역(JX999)에 사유를 기재하여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둘째, 수액제 투여하기 전 정맥내 일시주사한 경우 수기로 청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 진료현장에서 주사제 투여 시에는 환자의 불편감 감소를 위해 먼저 수액제를 통해 주사제 투여 경로를 확보 후 iv side로 주사약제 투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따라, 마5 수액제 점적수기로(KK051 등)와 정맥내 일시주사(KK020)를 동시 청구 시에는 정맥내 일시주사(KK020)가 KK054(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로 사례별 전산심사 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줄단위 특정내역(JX999)내역 등에 사유를 기재하여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셋째, 진료상황에 따라 KK020과 KK054 동시 청구 가능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득이한 상황에서 실제로 약제를 정맥내 일시 주사(KK020)후 수액주사하고 iv side로 투여하였다면 각각의 수기로는 청구 가능합니다.

라. 아울러, 유선으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질문 하신 이외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주사 수기로 산정방법과 인정여부는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전주지원 심사평가부 오지혜 과장(☎ 063-249-796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